

2025년도 2차 추경 초기창업패키지(딥테크 분야) 모집공고

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기 단계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『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(딥테크 분야)』에 참여할 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7월 1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- 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
- 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- 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초기창업 패키지(딥테크 분야)」 '협약체결 약속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** : 빅데이터·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
- 지원대상** : 딥테크 5대 분야*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* ①빅데이터·AI, ②바이오·헬스, ③미래모빌리티, ④로봇, ⑤친환경·에너지 등 5개 기술 분야에 한함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(평균 0.7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- 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선정규모** : 총 222개사 내외

<기술 분야별 선정 규모(안) >

기술분야	빅데이터·AI	바이오·헬스	미래모빌리티	로봇	친환경·에너지
선정규모	112개사 내외	33개사 내외	33개사 내외	22개사 내외	22개사 내외

* 분야별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진행(주관기관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)

< 딥테크 기술별 예시 >

기술 분야	기술 예시
빅데이터·A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데이터 수집, 데이터 분석·관리·보안, 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솔루션 등 • 인공지능 소프트웨어, 인공지능서비스,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
바이오·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공지능 의료기기, 디지털 치료기기, 전자약, 고령친화·재활시스템, 모바일 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,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 등 • 유전자·세포 치료제, 감염병 백신·치료제, 합성 생물 제조 시스템, 목표 질환 치료 신약 등 바이오의약품
미래모빌리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율주행 알고리즘, 자율 협력 주행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•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, 드론 등 • 무인 배송, 자율주행 화물 운송 등 스마트 물류
로봇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능형 물류·배송 로봇, 푸드테크 로봇, 행동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, 돌봄 로봇, 환자 보조 로봇, 지능형 가정용 로봇, 3D 센싱 기술 등
친환경·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소,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연료의 생산, 저장·이송 등 • 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수소,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하는 제품·서비스

※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(중복지원 불가)

※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가능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평균 0.7억원 내외), 창업프로그램 등

구분	지원내용
사업화 자금	• 시제품 제작, 사업모델(BM) 개선,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
창업프로그램	• 기술이전, 시장진입, 투자유치,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2

세부 지원 내용

구분	지원 세부 내용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.7억원 지원*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

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7,000만원인 경우) >

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
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

<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>

비 목	비목 정의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
여비	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창업
프로그램

- 기술이전 프로그램, 글로벌 진출 지원, 실증·검증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5대 분야 초기창업기업 지원

유형	프로그램 예시
① 기술이전	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
② 시장진입	판로 개척, 네트워킹, 민간 연계, 글로벌 연계
③ 투자유치	투자 교육, 모의 및 실제 투자 IR
④ 실증 검증	멘토링, 기술 실증 등
⑤ 자율 프로그램	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딥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인 자(기업)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- ▶ 딥테크 5대 분야 : ①빅데이터·AI, ②바이오·헬스, ③미래모빌리티, ④로봇, ⑤친환경·에너지
- ▶ 신청가능 업력 : **2022년 7월 11일로부터 창업 3년 이내 기업**
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 - 공동대표 또는 각차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 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붙임 11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 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- ★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'창업기업확인서'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(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붙임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[붙임 3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 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단,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* 「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([붙임 4] 참조)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-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, 중소벤처기업부·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

4

접수 기간 및 방법

□ **접수 기간** : '25년 7월 16일(수) ~ 8월4일(월), 16:00까지(16시 정각 마감)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사업 신청, 작성 내용 수정 및 제출 불가**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**해야 **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**이 가능하고, 접수된(8.4. 16시 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**접수 방법**

○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**'별첨 5] 사업 신청 매뉴얼'**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, **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**
 - 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- ③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** 시, 아이폰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제출 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 ([별첨 1] 양식)

*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(해당 시, [별첨 2]의 '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' 참고)

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	용량 제한 30MB
③ 증빙서류 (필수 증빙서류 등 포함) *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		

5 평가 및 선정 절차

□ **평가 절차** : 3단계 평가(서류 → 심층인터뷰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심층 인터뷰	④ 발표평가	⑤ 최종 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(1.5배수 내외 선정)	창업아이템 관련 대표자 인터뷰 (서류평가 통과자 대상)	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'25.8월	'25.8월 초	'25.8월 중	'25.8월 말	'25.9월 초

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
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자(기업)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,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 규모의 1.5배수 내외)
- ③ **심층 인터뷰** :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·우수성, 성과 창출 가능성 검증
 - 심층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인터뷰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
 - * 운영시간 : 30분 이내 (창업자 경력사항 및 사업계획(아이템) 관련 질의응답) 예정,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
- ④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필요성, 개발계획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발표평가는 동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 - 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분 + 15분 질의응답)
 - *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 - *** 발표평가 장소 내 대표자 외 직원 배석 불가
- ⑤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
 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(3일차 17시까지, 휴일불산입) 「초기창업패키지」 협약체결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*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 -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정부 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 - 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 -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 - * 선정평가 결과,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짐

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
 - 단, '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'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
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절차에서 '제외' 처리됨
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'협약 체결 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 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한 사업비 지출 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기타 사항

□ 문의처

○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
No.	기술 분야	주관기관명	담당자 연락처
1	빅데이터·AI	가톨릭관동대학교	033-649-7198
			033-649-7187
2		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	062-364-9162
			062-364-9163
3		국립한밭대학교	042-828-8664
			042-828-8668
4		✓ 단국대학교	031-8005-2862
			031-8005-2864
5		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	051-749-8969
			051-749-8958
6		서울과학기술대학교	02-970-9024
			02-970-9152
7	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02-749-9052
			02-739-7264
8		씨엔티테크	02-3152-8660
			02-3152-6953
9		영산대학교	055-380-9659
			055-380-9103
10		인하대학교	032-860-9371
	032-860-9326		
11	바이오·헬스	국립순천대학교	061-750-5433
			061-750-5457
12		순천향대학교	041-530-4826
			041-530-4835
13		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	064-754-4406
			064-754-4407
14	미래모빌리티	경북대학교	053-950-7655
			053-950-7657
15		수원대학교	031-229-8524
			031-229-8561
16	로봇	고려대학교	02-3290-4812
			02-3290-4814
17		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	053-359-3625
			053-759-9655
18	친환경·에너지	동아대학교	051-200-6365
			051-200-6452
19		한국수자원공사	042-629-5362
			042-629-5363

붙임 1

창업 여부 기준표

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	창 업
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붙임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붙임 3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**

- 초기창업패키지 (실험실특화 포함)
- 창업도약패키지 *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
-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
-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
- 창업중심대학 * 예비트랙 수행기업 제외

붙임 4

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· 창업도약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 (Micro Dips, AX 스타트업 육성, 팍리스 일관지원, 링크업 등)	중소벤처기업부
5	·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(TIPS 사업화, 프리팁스, 포스트 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6	· 통합창업패키지(특화창업패키지)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9	·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1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4	·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·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·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·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3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5	·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6	·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7	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